

직무설명자료: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

□ 직무 개요

직무분류	-	소속 부서	진료심사평가위원회
직무명	상근심사위원	소속 부	진료심사평가위원회

□ 직무 목적

목적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6조에 의한 법정위원회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약분야 전문가를 확보, 전문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및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우리원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·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함
----	--

□ 핵심과업별 책임 및 역할

핵심과업	책임 및 역할
요양급여비용 심사, 심사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	·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, 급여기준·심사지침 등 제·개정 사항 발굴, 임상현장과의 적정진료 연계 시 전문가로서의 역할 수행
	· 관련부서의 질의가 있는 경우 전문가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
	· 의약계와의 협력 및 교류에 있어서 심사평가원 직원으로서의 업무 수행

□ 세부과업

연번	과업
1	· 전문분야별 심사의뢰건 직접 심사 및 자문 (소송, 분석기반 심사, 이의신청·심판청구·의료급여·민원, 신포괄수가 등 포함)
2	· 심사기준 제·개정사항 발굴
3	· 행위·약제·치료재료 관련 정책지원 (각종 위원회 참여)
4	· 해당 분야 직원대상 전문의학 교육
5	·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, 평가 모니터링, 평가수행기준 개선 과제 수행 등
6	· 의료정보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심사평가 기준 검토 및 정보화 정책 지원
7	· 일차의료 관련 제도 개선 검토·자문 및 정책 지원
8	· 의약계 등 업무 관련 대내외 소통

□ 직무요건

구분	상세 내용	
일반요건	요구 경력	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 또는 대학에서 종사한 사람 또는 보건의학·건강보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
	필수 자격	의사 등
교육요건	요구 학력	의사 및 전임강사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 필수
	요구 전공	「의료법」 제77조, 「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제2항에 따른 진료과목 등
필요지식	건강보험에 관한 이해, 심사 관련 지식, 관련 법령 이해(「국민건강보험법」, 「의료법」 등), 의료 임상 지식, 급여기준 관련 지식, 보건의료선협 사례· 국내외 보건의료 동향·의학전문용어, 의학적 지식 등	
필요기술	임상 실무 경험 및 관련 노하우, 제도 운영의 다면적 효과분석 및 평가 능력, 제도 개선점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능력, 보고서 작성 능력, 데이터·AI 활용 능력 등	
직무수행 태도	정보분석 및 검증에 대한 정확성·전문성,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력, 국제교류 시 기관차원 업무수행자로서의 자세, 철저한 정보보안 및 외부유출 금지 의지, 업무수행의 투명성·공정성·청렴성 등	
추천 교육	전문분야 학회 또는 포럼 참석 등	